

안양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지침

제정 1992. 3. 7 예규 제19호
개정 1995. 8. 7 예규 제23호
개정 2004. 10. 20 예규 제43호
전부개정 2011. 12. 29 예규 제50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5. 11. 30 예규 제59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15. 11. 30>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이 지침에 따른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3년 이상 안양시에 재직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30>

1. 해성문화재단 장학금

- 가. 4년제 정규대학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
- 나.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품행을 가진 사람
- 다. 학업성적이 평균 3.0(B학점)이상인 사람

2. 그 밖의 장학금

- 가. 2년제 정규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
- 나.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품행을 가진 사람
- 다. 학업성적이 평균 3.0(B학점)이상인 사람

제3조(선정인원 및 장학금) 선정인원 및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1. 30>

- 1. 해성문화재단 장학금: 해성문화재단에서 정하는 인원 및 금액
- 2. 그 밖의 장학금: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인원 및 금액

제4조(선정방법) 장학생은 본인의 신청과 소속 부서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상자의 성적·품행·생활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. <개정 2015. 11. 30>

제5조(구비서류) 장학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

안양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지침

2015. 11. 30>

1. 신청일 전학기 수업료납부서 또는 고지서 사본
2. 신청일 전학기 성적증명서
3. 장학금 대상자 추천서(별지 제1호서식)
4. 재산 현황(별지 제2호서식)

제6조(지급정지)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수혜 중이라 하더라도 제2조의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장학금 수혜자가 해당 학교로부터 학칙에 따른 중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장학금 지급을 취소·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1. 30>

부칙 <2011. 12. 29 예규 제50호 전부개정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30 예규 제59호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1. 30>

장학금 대상자 추천서

장학금 신청자(학생) 인적사항
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
	(한자)		
학 교 명		학 과	
학 년		학 번	
해 당 연 도 전 학 기 성 적		이 수 학 점	
교 내 장 학 금 수 혜 여 부			
기 타	※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정하여 기록		

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위와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학(교) 총·학장 직인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1. 30>

재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유자 (학생과의 관계)	세부내역	금 액	비 고
계				
1. 부동산				
2. 동산				
3. 연수입				

첨부(증명서류) : 건 물 - 주택가격확인원, 건물시가표준액(주택이외의 건물)
 토 지 - 토지(임야)대장
 전 세 - 전세계약서(사본)
 동 산 - 금융거래확인서, 예금잔액증명서
 연수입 - 원천징수영수증

위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장학금 선발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성명: (인)

안 양 시 장 귀하